



의안번호	제 2024 - 17호
보 고 연 월 일	2024. 8. 12. (제133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운영지원단 업무보고

제 출 자	운영지원단장
-------	--------

목 차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1
II. 양형연구회 정기총회	2
1. 2024년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개최	2
2. 2024년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결과	2
III.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4
1. 개요	4
2. 행사 개요	4
3. 참석자	4
4. 심포지엄 주요내용	5
5. 심포지엄 세부일정	10
IV. 2024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2
1. 목적	12
2. 교육기간 및 장소	12
3. 교육과정	12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12
5. 교육내용	12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3
1.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3

2. 보험연구원 백영화 접수의견 보고	13
3.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3
4.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3
5.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4
6. ‘법원에 바란다’ 접수의견 보고	18
7.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의견 보고	19

[별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관련 의견서 (손해보험협회,24.6.21.자) 2. 보험사기범죄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보험연구원 백영화) 3.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관련 검토의견 (손해보험협회,24.7.9.자) 4.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사기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3부 (손해보험협회,24.8.1.자) |
|--|

I. 전문위원 회의 업무 지원

- 운영지원단은 전문위원 전체회의의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였음
- 전문위원 전체회의 개최 현황

회의명		일 시	안 건
전문위원 전체 회의	제163차	2024. 7. 15. 14:00	○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 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검토

II.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1. 2024년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개최

- 일시: 2024. 6. 24. 13:30
- 장소: 대법원 401호 대회의실
- 참석자: 양형연구회 임원 및 회원

2. 2024년 양형연구회 정기 총회 결과

(1)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구성·선출(연임)

순번	구분	성명	직위	신규 선출/연임 여부
1	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상근 부회장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3	부회장 (검사)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신규 선출
4	부회장 (변호사)	전현정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5	부회장 (교수)	조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 (한국법심리학회 회장)	
6	운영위원 겸 수석간사	최승원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연임
7	운영위원 겸 연구간사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8	운영위원 겸 편집간사	송영복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연임
9	운영위원 겸 기획간사	문중흠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인준
10	운영위원	류부곤	경찰대학교 수사학과장	연임
11	운영위원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12	운영위원	이성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인준
13	운영위원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임
14	운영위원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연임
15	운영위원	박천웅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법학사회학회)	연임
16	운영위원	이창민	한양대 경영대 교수 (한국법경제학회)	연임

(2) 양형연구회 2023년 사업 보고

- 양형연구회 제10차 심포지엄 개최 『AI와 양형』
 - 2023. 6. 26. 14:00 ~ 18:00
 - 대법원 1층 대강당
-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제11차 심포지엄 개최 『스토킹 범죄와 양형』
 - 2023. 9. 7. 14:00 ~ 17:00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신규 회원 가입(18명)

(3) 양형연구회 2024년 사업계획 승인

-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개최 『사기범죄와 양형』
 - 2024. 6. 24. 14:30 ~ 18:00
 - 대법원 1층 대강당
- 양형연구회 하반기 심포지엄 개최(2024. 12. 2.)
 - 구체적인 시기, 주제 등은 하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함
- 신규 회원 가입(7명)

III. 양형연구회 제12차 심포지엄 결과 보고

1. 개요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및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란 소주제별로 각계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
- 심포지엄 내용과 결과는 양형기준의 설정 및 수정 작업 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활용

2. 행사 개요

- 주 제: 『사기범죄와 양형』
- 주 최: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 일 시: 2024. 6. 24.(월) 14:30 ~ 18:00
- 장 소: 대법원 1층 대강당

3. 참석자

- 개회사: 양형위원회 위원장, 양형연구회 회장
- 진행자: 문중흠(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 사회자: 최환(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
최호진(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 발표자: 정성민(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박찬걸(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자: 권경선(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종호(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 검사)
이기수(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정현기(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전세정(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구길모(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 심포지엄 주요내용

(1) 제1세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 주제 발표 및 토론

(가) 정성민 부장판사(전 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발표 요지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심리나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양형실무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의 실무상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황
 - 최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만 건 전후의 형사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하고 있음. 종래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향후 동법이 적용되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이 시급함
-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이 적용될 것인데,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 등의 적용을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고, 범죄수익의 다과(多寡)를 고려하는 세부적 양형인자의 마련이 필요함
 -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는 하위 직원이라도 합의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없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음. 중위 직원인 유인책(콜센터)부터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총책은 징역 20년이 선고되기도 함
- 일본의 보이스피싱 범죄(특수사기)
 - 일본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고, 처벌규정이 우리나라와 비슷함. 특히 하위 직원의 처벌 비율이 높고, 실형 비율도 높으며 상위 직원으로 갈수록 중하게 처벌하는 등 양형실무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모습임

(나) 권경선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금수거책의 역할, 범행의 인식 내용 등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자체가 문제됨. 실무상 사기방조죄만 인정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확인됨. 나아가 현금수거책에 대한 공동정범의 인정범위도 문제됨
- 현금수거책의 수거금액은 취득이득과 비례하지 않고, 그 다과는 현금수거책의 의사나 행위와 관계없는 우연에 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수거금액의 다과에 따라 형량범위에 큰 차등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 유인책(콜센터)이 현금수거책과 비슷하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현금수거책의 경우 행위태양과 범행수법을 유형 분류에 고려하거나 특별양형인자를 조정하는 등 담당할 역할에 부합하는 형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 박종호 검사(서울동부지방법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리딩방 사기, 투자금 손실보상 사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피해구제 및 수사과정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함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은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단순가담’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담정도에 대한 특별양형인자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양형상 감경요소로 삼거나, 현금수거책 등의 미필적 고의를 쉽게 부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범의의 판단과 양형요

소로 고려함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라) 이기수 교수(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의 지정토론 요지

- 최근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감소하면서 검거율은 올라간 반면 사기범죄의 발생건수는 2021년 294,075건으로 2017년 대비 약 22%가 증가하고 검거율은 오히려 낮아짐. 보이스피싱 범죄의 예방에 필요한 위하효과(威嚇效果)가 약한 것으로 생각되고, 2023년에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한 것은 타당함
- 피해자가 높은 수익을 추구하였다고 하여 범죄자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여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감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범죄자가 단순가담을 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스스로 합류한 것이고 범죄의 인식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요소로 삼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한편 보이스피싱 범죄군을 별도의 양형기준으로 신설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과 중첩되거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2) 제2세션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 주제발표 및 토론

(가) 박찬걸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발표 요지

- 조직적 사기범죄에 실제 적용되는 개별 양형인자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양형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선고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
- 조직적 사기범죄의 개별 양형인자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보다 특별감경인자의 수가 더 많으므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여 가중인자와 감경인자 수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특별감경인자인 '단순 가담'의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고, 소극 가담과 이종으로 양형인자로 참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심신미약이나 청각 및 언어장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양형인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의 정의규정이 없는데, 일정 수준 이상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정하여 정의규정을 두는 것이 사법신뢰에 있어 바람직
- 처벌불원에 있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피해자가 영업이 정상화되어야 이미 지급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경우 오히려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한 반면 피해자의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전자의 사정은 무시하고 후자의 사정만으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함

○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에 대한 개선방안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한데, 기존 유형분류에 포함하되 형량범위를 상향하는 방안이 적절함
- 조직적 사기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서, 피고인이 다수의 인적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족함
-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에서의 이득액 산정은 양형요소로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피고인의 실질적 이득액을 양형기준의 잣대로 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하는 것은 특별가중·감경인자 수의 균형상 불합리하고 일반적 감경인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즉 조직적 사기를 위하여 결성된 단체 또는 집단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통해 예비·음모 단계에 대한 처벌 및 범죄수익의 몰수·추징도 가능할 수 있음

(나) 정현기 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의 지정토론 요지

- 단순가담은 객관적 기여의 정도에 따른 구분, 소극가담은 주관적 의욕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생각되나, 보다 더 명확히 구분하여 정의될 필요는 있음. 피고인이 단순 가담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범행 완

성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이었다면, 그 역할만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중인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미활용 양형인자를 삭제하고 새로운 양형인자를 발굴할 필요는 있으나 양형기준상 가중, 감경인자 수의 균형을 맞추어 필요 있음. 관련하여 조직적 사기에서는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이 조직원 전원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피해회복’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진지성, 상당성 등 질적 개념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추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재판지연을 야기할 수 있음. 한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조직적 사기의 특별가중인자로 추가하는 것은 이중평가가 될 우려가 있음

(다) 전세정 부부장검사(수원지방검찰청)의 지정토론 요지

- ‘경합범 규정의 개정’ 또는 ‘조직적 사기의 경우 동종 사기범행의 피해액을 합산하여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즉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을 형법상 단순 사기죄로 의율할 경우 형법상 경합범 규정의 한계로 선고형이 과경하여 일반인의 법감정에 반할 수 있음
- 대규모 사기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이 일반적인 법감정에 맞게 상향되어야 하고, 형법상 사기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 기준의 소유형의 세분화도 필요함
-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이 유형화되어 있는 경우 행위가담 유형 관련 가중 및 감경인자를 어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해설로 부기하거나 ‘단순 가담’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개선하여 양형의 통일성, 균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단순 가담’ 감경요소의 적용 자체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음

(라) 구길모 교수(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정토론 요지

- 조직적 사기 중 중대 사건에 해당되는 제3 내지 5유형에서의 양형 기준 준수비율이 낮게 나타남.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형량범위를 낮추거나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므로,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별개의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음. 이로 인해 선고형이 과소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형사법은 범죄인에 대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추구하므로,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함

5. 심포지엄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30	참가자 등록	
14:30-14:40 [10분]	개회식 (2분)	진행: 문중흠 양형연구회 기획간사
	인사말 (각 3분)	1. 이상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2. 이주원 양형연구회 회장
	장내 정리 (2분)	
14:40-16:10 [90분]	◆ 제1세션 「소주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양형연구회 상근부회장	
14:40-15:10 [30분]	주 제 발 표	• 정성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무상 쟁점과 양형
15:10-15:25 [15분]	지 정 토 론	• 권경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시 간		내 용	
	15:25-15:40 [15분]	지 정 토 론	• 박종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15:40-15:55 [15분]	지 정 토 론	• 이기수 전남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15:55-16:10 [15분]	플 로 어 토 론	
16:10-16:30 [20분]		중간 휴식(기념촬영)	
16:30-18:00 [90분]		◆ 제2세션 「소주제: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사회 :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양형연구회 운영위원	
	16:30-17:00 [30분]	주 제 발 표	• 박찬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17:00-17:15 [15분]	지 정 토 론	• 정현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17:15-17:30 [15분]	지 정 토 론	• 전세정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7:30-17:45 [15분]	지 정 토 론	• 구길모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45-18:00 [15분]	종 합 토 론	
	18:00	◆ 폐회	

IV. 2024년도 하반기 양형자료분석관 직무교육

1. 목적

- 양형자료조사, 양형기준 운영점검 등 양형자료분석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배양
- 신규 양형자료분석관에 대한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2. 교육기간 및 장소

- 교육기간
 - 2024. 7. 4.(목) ~ 2024. 7. 5.(금)
- 장소
 - 사법연수원 융합IT강의실(113호)

3. 교육과정

- 양형자료조사 및 운영점검 업무 교육

4. 교육 대상자 및 강사

- 교육 대상자(15명): 양형자료분석관
- 강사(3명): 운영지원단장, 자료조사과장, 통계행정관

5. 교육내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
 - 양형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
 - 양형기준 운영점검에 관한 이론 및 분석방법
 - 양형기준 운영점검시스템 매뉴얼 안내 및 사용방법 실습
-

V. 각종 의견 접수 및 처리

1.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 ‘보험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관련 의견서’ 제출(2024. 6. 21.)

○ 공문 및 의견서 [별첨1]

(2) 주요내용

- 보험사기의 특수성
- 보험사기죄 별도 유형분류 필요성
- 보험사기죄 양형인자 제안

2. 보험연구원 백영화 접수의견 보고

(1)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제출(2024. 6. 24.)

○ 의견서 [별첨2]

(2) 주요내용

- 보험사기 양형기준 설정시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
- 향후 검찰 사건처리기준에도 보험사기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함

3.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관련 검토의견’ 제출(2024. 7. 9.)

○ 의견서 [별첨3]

(2) 주요내용

- 보험사기의 특수성
- 보험사기 범죄에 관하여 별조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4. 손해보험협회 접수의견 보고

(1)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보험사기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 제출

(2024. 8. 1.)

- 의견서 [별첨4-1~3]

(2) 주요내용

- [별첨4-1] 보험사기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한 경우를 중심으로
- [별첨4-2] 보험사기 관련 양형인자에 대한 의견-고지의무 위반을 중심으로
- [별첨4-3] 사기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개선안 등

5.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1) 개요

- 양형위원회의 활동 및 양형에 관한 정책 건의, 제안 등을 듣고자 하는 국민 참여 공간인 '양형위원회에 바란다'(<http://sc.scourt.go.kr>)에 접수된 의견 보고

(2)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7. 26.까지 총 136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의견요지
1	2024. 6. 2. ~2024. 7. 6. (27)	○ 취지불명
2	2024. 6. 21. ~2024. 6. 25.(6)	○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3	2024. 6. 25.(1)	○ 개별사건 강력 처벌 요청
4	2024. 6. 21. ~2024. 6. 25.(6)	○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5	2024. 6. 25.(1)	○ 개별사건 강력 처벌 요청
6	2024. 6. 28. ~2024. 7. 7.(2)	○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7	2024. 7. 3.(1)	○ 취지불명
8	2024. 7. 3. ~ 2024. 7. 6.(58)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처벌 강화 요청
9	2024. 7. 3. ~ 2024. 7. 4.(14)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입법 강화 요청
10	2024. 7. 4. ~ 2024. 7. 5.(2)	○ 취지불명
11	2024. 7. 5.(1)	○ 취지불명 · 중범죄자 양형 강화 요청
12	2024. 7. 5.(1)	○ 보험사기죄 양형인자 관련 건의
13	2024. 7. 5.(1)	○ 반복민원
14	2024. 7. 8. ~ 2024. 7. 15.(2)	○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15	2024. 7. 9. ~ 2024. 7. 10.(3)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처벌 강화 요청
16	2024. 7. 12.(1)	○ 취지불명 ·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처벌 강화 요청
17	2024. 7. 9. ~ 2024. 7. 14.(4)	○ 취지불명
18	2024. 7. 17.(1)	○ 반복민원
19	2024. 7. 17.(2)	○ 취지불명
20	2024. 7. 17. ~ 2024. 7. 25.(2)	○ 사기 범죄 형량 강화 요청

○ 1번, 7번, 10번, 17번, 19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2번, 4번, 6번, 14번, 20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사기범죄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5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개별사건 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8번, 1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9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1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중범죄자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12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보험사기 범죄 양형 인자에 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13번, 18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반복 민원으로 별도의 회신 없이 공람 종결하였습니다.

○ 16번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6. '법원에 바란다' 접수 의견 보고

-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7. 26.까지 총 2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4. 6. 8.(1)	○ 사기범죄 형량 강화 요청
2	2024. 7. 5.(1)	○ 사기범죄 형량 강화 요청

○ 1번, 2번에 대한 처리결과

- 사기범죄의 양형 강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7. ‘국민신문고 게시판’ 접수 의견 보고

(1) 회신 완료 접수의견(2024. 7. 26.까지 총 8건): 동일 요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로 회신함

연번	접수일자(접수건수)	민원 요지
1	2024. 06. 07.(1)	○ 사기범죄 형량 강화 요청
2	2024. 06. 14.(1)	○ 채권추심법위반범죄 양형 강화 요청
3	2024. 06. 17.(2)	○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입법 및 형량 강화 요청
4	2024. 07. 16.(1)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양형 강화 요청
5	2024. 07. 22.(1)	○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성범죄 입법 및 양형 강화 요청

6	2024. 07. 22.(1)	○ 2024년 양형 체험 프로그램 대상 범죄 문의
7	2024. 07. 22.(1)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양형 강화 요청

○ 1번, 2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의견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3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보호법위반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4번, 7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귀하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취지에 관하여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5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양형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의결기관으로, 법 제·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위원회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동물보호법 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 취지에 관하여는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 보고하여 향후 양형위원 전체회의 또는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

○ 6번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 ‘당신이 판사입니다’의 2024년 신규 제작 대상 범죄로 ‘강도상해죄’와 ‘무고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영상은 12월경 오픈될 예정입니다.
- 양형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와 같은 취지로 회신